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(4급 1명, 5급 5명, 6급 1명) 중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중 “전자금융과”를 “금융안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자금융과장”을 “금융안전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3호(중전의 제11호) 중 “제10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제10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(중전의 제13호)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4호”로 한다.

1.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
 2.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
 3.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
 4.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·감독
- 제22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

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정보보호”를 “전자금융
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(중전의 제13호)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1호”로
하며, 같은 항 제13호(중전의 제14호)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하고, 같
은 항 제14호(중전의 제15호) 중 “제14호”를 “제13호”로 한다.

9. 전자금융거래·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

10.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·등록·감독

별표 1 중 행정주사보 “7”을 “5”로,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7”을
“9”로 한다.

별표 2 중 행정사무관 “10”을 “1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
“13”을 “12”로 하며, “행정주사 4”를 삭제하고,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
“10”을 “14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업구조개선과(존속기한: 2024년 10월 15일)

총계	5
일반직 계	5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	4

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부칙(총리령 제16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
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, “2023년 10월 15일”을 “2024년 10월 15일”로,

“2023년 10월 16일”을 “2024년 10월 16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① 이 규칙 시행
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
건비제로 활용·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(행정사무관 4명,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)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5
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(행
정주사 4명,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)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
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
명(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)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
며,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
1명(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)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금융산업국) ① (생략)	제10조(금융산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·보험과·중소금융과 및 <u>전자금융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금융안전과</u> -----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전자금융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<u>금융안전과</u> 장-----.
1. <u>전자금융거래·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</u>	1. <u>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</u>
2. <u>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·등록·감독</u>	2. <u>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</u>
<신설>	3. <u>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</u>
<신설>	4. <u>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·감독</u>
3. ~ 10. (생략)	5. ~ 12. (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11. 제1호부터 <u>제10호</u> 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	13. ----- <u>제12호</u> -----

12. 제1호부터 <u>제10호</u> 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14. ----- <u>제12호</u> -----
13. 제1호부터 <u>제12호</u> 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	15. ----- <u>제14호</u> -----
제22조(금융혁신기획단) ① ~ ③ (생략)	제22조(금융혁신기획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, 제7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	④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</u>	9. <u>전자금융거래·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</u>
10. <u>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</u>	10. <u>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·등록·감독</u>
11. <u>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</u>	<삭제>
12. <u>금융분야 데이터 활용, 정보보호,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</u>	11. ----- <u>전자금융업</u> -----
13. 제1호부터 <u>제12호</u> 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	12. ----- <u>제11호</u> --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7	5	-2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7	9	+2
·	·	·	
·	·	·	

14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	13. ----- 제11호----- ----- -----
15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⑤ (생 략)	14. ----- 제13호-----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
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(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)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고, 2023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.	제2조(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과학기술서기관 -- 2024년 10월 15일----- 2024년 10월 16일 ----- ----- -----과학기술서기관----- ----- -----.

[별표 2]

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10</u>	<u>11</u>	+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<u>13</u>	<u>12</u>	-1
·	·	·	
<u>행정주사</u>	<u>4</u>	<u><삭 제></u>	-4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<u>10</u>	<u>14</u>	+4
·	·	·	
·	·	·	